

을 종합하여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기술고안을 한 자가 실용신안권으로서 등록한 것을 말하고, 그 등록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보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6)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이며, 권리의 발생·이전(移轉)·행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으로서 회사가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것이며, “주식권”이란 주식회사의 구성원(사원 또는 주주)으로서 지위(주주권)를 표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권이 발행됨으로써 주주로서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권증권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의 이전을 위해서는 주식권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출자”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법인 등으로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며, ‘출자로 인한 권리’란 법인의 자본이나 기금을 구성하는 출자·출연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자본을 구성하는 출자는 현금출자가 대부분이나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또한 출자로 인한 권리가 유가증권으로 표상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 대

한 출자가 주식권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같은 국·공유재산이라도 유가증권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채권”이란 회사의 채무를 증권화하여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채권’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는 교통, 가스, 수도사업, 재해복구,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공채, 지하철공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전화가입권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정리종목표(재무부고시 제86-11호, '86. 5. 24)에 무체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86. 8. 6. 감사원으로부터 전화가입권은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으로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에 계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이란 수익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 및 수탁자에 대한 설명청구권, 법원에 대한 신탁재산관리방법 청구권, 법원에 대한 수탁자 해임청구권, 수탁자 경질에 따른 사무